

## 2025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<정책지원관>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5. 7. 16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예정 분야	채용직급	채용기간	채용인원	담당업무
정책지원관	일반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	임용일~'26.6.30.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</li><li>·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</li></ul>

- ※ 1.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(지방공무원 임용령)에 따라 연장 가능
- 2.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
- 3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의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

### 2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

### 3. 응시자격 기준

#### 가. 공통사항 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##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 3. 29.>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<신설 2016. 3. 29.>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〉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- 성별 제한은 없으나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지역 제한 없음

나. 채용자격기준(공고일 현재 기준)

채용분야	자 격 요 건
정책지원관	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○ 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교 등에서 <u>행정, 사회복지, 법무, 예산, 회계, 감사, 사회조사, 정책개발·분석, 입법지원, 시설분야(도시계획, 토목, 건축, 지적 등)</u> 관련 업무 경력 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 한함)

-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
- ※ 공공기관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(‘공공기관 알리오’, ‘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’ 에서 확인가능)

- ※ 전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(주 40시간 기준)
- ※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)

#### 4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##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·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###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### 다.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  - ※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
- 동점자 처리
 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 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#### 5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5. 7.16.(수) ~ 7.31.(목)	2025. 8. 1.(금) ~ 8. 5.(화)	2025.8.18.(월) 예정	2025. 8월중	2025. 9월초(예정)

- ※ 채용공고는 서구 의회 홈페이지 고시/공고란에 공고
- ※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
- ※ 상기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## 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- 나. 접수기간 : 2025. 8. 1.(금) ~ 2025. 8. 5.(화)
- 다. 응시원서 접수처 : 서구의회 의회사무국[의정팀]
- 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평일 09:00 ~ 18:00/11:30~13:00제외)
  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✉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  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  -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7. 보수 및 복무조건

### 가. 보수

- 연봉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급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68,388천원	<u>48,572천원</u>

- 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연봉 외 급여(수당)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
  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나. 복무조건

구 분	일반임기제공무원(7급)
근무기간	임용약정일 ~ '26. 6. 30.
소 속	인천광역시 서구의회
근무처	의회사무국
근무시간	주40시간(09:00~18:00, 1일 8시간, 주5일 근무)
복무기준	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및「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복무 조례」준용
약정해지	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시

## 8. 제출서류

### 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응시수수료 : 정책지원관 7,000원
- 방문접수 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)
- ※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

### 나. 이력서 1부 <서식2>

- A4용지 소정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, 상단에 연락처 기재
-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.

### 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<서식3, 서식4>

- A4용지 1~3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### 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<서식 5>

### 마. 경력증명서 1부

- ※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- ※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
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- 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)
- 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(날인) 받아 제출
- ※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- ※ 재직기간, 인사이동사항, 직위.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.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

\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, 2021. 2. 16.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: 3년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
  -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,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

바.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

사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(경력확인용)
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-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
- ※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

아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자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 또는

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현주소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차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<서식8>

카.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부 <서식9>

타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## 9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관련문의 : 의회사무국 의정팀(☎ 032-560-5852)